

의안번호	제594호
의결 연월일	2013년 12월 일 (제325회)

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최진섭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12월 2일

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최진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4
----------	-----

- 발의연월일 : 2013년 12월 2일
- 발 의 자 : 최진섭, 김동환, 박상필, 이광희, 장병학, 전응천, 하재성 의원

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및 위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함(안 제2조)
- 나.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다. 교복나눔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 근거 마련(안 제4조)
- 라.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 사업 과정 및 결과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마.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),
- 바. 교복나눔운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(안 제7조)
- 사.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게 포상근거 마련(안 제8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초·중등교육법 제2조」,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조례」

나. 관련부서 협의: 협의 완료

다. 예산조치: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3. 11. 11. ~ 2013. 11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2) 규제사항: 해당없음

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복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하복,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.
2. “교복나눔”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기증한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교환 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교복나눔운동”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복나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항
2. 추진 및 지원사업의 위탁 여부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비영리 민간단체 위탁)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(이하 “민간단체”라 한다)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 민간단체 관리)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6조(경비지원)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「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참여 학생 인센티브)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참여 한 학생에게 표창, 그 밖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을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초·중등교육법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, 타법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3.21]

□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[조례 제3474호, 2012.6.29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"행사"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게 수여한다.

제3조(표창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.

제8조(표창권자)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및 교육장이 행한다.

제9조(표창 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,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,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.

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(우승기, 우승컵, 상패, 공로패, 메달, 기념품, 포상금, 장학금, 연구비, 해외연수 특전 등)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.